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4년 1년간 허용했던 냉장냉동차, 차량수송용 차량에 대한 타 유
형으로의 대차 허용을 추가로 1년을 연장하고, 진개덤프의 대폐차
범위를 재활용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 외에 철스크랩
운반용 차량까지 대폐차 범위를 확대하며, 최대 적재량을 늘리는 대
폐차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춰 탄소
배출저감 장치 등 조건충족 시 16톤까지 한 번에 대폐차 할 수 있
도록 허용하는 등 대폐차 규정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로 2024년 12월 18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044-201-4017, 팩스 044-201-5601)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